

| | |
|--------------|------------------|
| 의안번호 | 제 1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8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8년 7월 3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 |
|----------|---|

제출연월일 : 2018년 7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구축·운영

2. 주요내용

-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안 제2조~제3조)
 - 부패방지 정책 등에 대한 심의
 - 민관협의회는 의장 2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해촉, 회의(안 제4조~제7조)
 -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소집 및 회의업무 총괄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와 운영 (안 제8조)
 - 실무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 청렴업무 담당부서장, 민관협의회 위원은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에 준하는 사람 등
-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가능
- 수당 등(안 제12조)
 -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가능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련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업하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충청북도 지역의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

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회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회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회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2. 충청북도시장·군수협회의회 의장
3. 민관협회의회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장
4. 지역을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회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 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회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회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

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전문분과) ① 민관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회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회의회의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회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회의회의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회의회의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관협회의회의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민관협회의회의와 실무협회의회의,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회의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회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회의회의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10호 / 2018. 1. 3. 제정·시행)

제9조(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구축·운영 및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소요 사업비
- 협의회(실무, 전문분과 포함) 위원 수당, 여비 등 소요 사업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수당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관협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활동 및 위원회 참석 수당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민관협의회 운영지원 : 10,000천원 (매년)
-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수당 등 : 10,000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민관협의회 운영비 : 도비(100%)
-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자 수당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충청북도감사관 손 자 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18년) | 2차년도 (2019년) | 3차년도 (2020년) | 4차년도 (2021년) | 5차년도 (2022년) | 계 |
|----------------------|-----------------|-----------------|-----------------|-----------------|-----------------|--------|
| 세 입 | | | | | | |
| 세 출 | 5,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85,000 |
| 민관협의회 운영지원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40,000 |
| 협의회 참석수당 | 5,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45,000 |
| 재원 조달 | 5,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85,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보조금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자체 재원 | 소 계 | 5,000 | 20,000 | 20,000 | 20,000 | 85,000 |
| | 도 비 | 5,000 | 20,000 | 20,000 | 20,000 | 85,000 |
| |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기 금 | | | | | | |
|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 | | | | | |
| 시.군비 | | | | | | |
| 기 타 (민간 자부담) | | | | | | |

▶ 산출기초

- 위원회 참석수당 : 2개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 25명(공무원 제외) * 연2회 * 100천원
(수당) = 10,000천원 ※ 2018년도 1회 개최, 2019년도부터 연 2회
- 공동사업비(2019년 부터) : 보조금 10,000천원 * 1회 = 10,000천원